

## 2024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4년도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원양산업과-458)에 따라 2024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코자 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

### 1. 원양어업경영자금 개요

#### 가. 운용규모

- 전체규모 : 2,572억원
- 24.5월 모집 규모
  - 신규: 119억원(경영자금 소진액을 매월 산출하여 매월 변경 공고)
  - 그 외: '23년 이전 대출 실행분 중 연장 잔여 회차가 남은 대출 건 또는 이자금리 변경 신청 건
-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
- 지원조건: 금리 3%(다만,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선박 수리·개조 관련 아래 조건 충족시 연 2.0%)
  - CTA 협정 준수 또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직전 1년\* 동안 선박 수리·개조에 지출한 비용 일체
    -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일 1개월 전 말일로부터 직전 1년  
(예시) '24.3월 신청 → 2023. 3. 1. ~ 2024. 2. 28.
  - 선박 수리·개조 기간 동안 안전 운항·조업을 위해 해당 수리·개조 선박에 선적한 필수용품 등\*비용 일체
    - \* 해당 선박 수리·개조 기간 외 조업·정박 중이거나 항해 중 운반선을 통해 전달받아 선적된 경우 제외
  - 직전 1년\* 내에 신조 또는 중고선 도입으로 선박을 대체한 경우, 대체선박 및 피대체선박에 소요된 수리·개조 비용 일체\*

\* 대체 도입 시, 기존 선박과 변경 선박 각각에 대한 수리·개조비를 명시하고 대체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자금 사용용도

- 선원임금, 복리후생비, 의료비, 통신비, 보험료, 선용품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원교체비, 운반비, 항만제경비, 어구비 등
- (자금 사용제한) 국내외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선박별 지원한도: 업종별 소요액 산정기준에 따른 해당 소요액
- 업체별 지원한도: 최대 200억원
  - \* 다수의 선박을 소유하더라도 업체별 지원한도 최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자기간

- (2024년 이전 대출실행 건) 1년씩 2회 연장 가능, 대출기간 동안 연체 이력이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1년 추가 연장 가능
- **(2024년 신규 대출실행 건) 1년 만기(연장불가)**
  - \* 폐업 등 원양어업자 및 어선에 대한 허가 등이 소멸된 경우 즉시 반납

다. 해당 소요액

업종	톤급	척당소요액(백만원)
연승업종	톤급 구분 없음	2,530
선망업종	1,000톤 미만	4,579
	1,000톤 이상	5,533
채낚기업종	톤급 구분 없음	3,728
봉수망업종	톤급 구분 없음	3,297
트롤업종	1,000톤 미만	7,550
	1,000톤 이상	9,372

※ 연승업종 적용 : 저연승, 통발·저연승겸업

봉수망업종 적용 : 통발, 채낚기·봉수망겸업

※ 소요액 산출방식: 업종별 최근 3년간('20~'22) 소요액의 평균값

## 2. 위반에 따른 자금 지원 제한

위 반 내 용	제 재 내 용	
	선 박	업 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
대출금을 목적 외로 부당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사유”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지침」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출금 전액 회수 및 대출 규모에 따라 지원제한 - 1억원이상: 2년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년6개월 - 3천만원미만: 1년	부당사용 대출금 규모에 따라 지원제한 - 1억원이상: 2년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년6개월 - 3천만원미만: 1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지원제한
3년 이내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승무기준) 등 안전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1차 : 경고 및 시정명령 2차: 대출금 전액 회수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지원제한
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명사고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출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지원제한

\*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연체이자를 징수 절차를 따른다.

\*\* 부당사용사유 등에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제한기간을 산정한다.

\*\*\*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 및 신청 관련 서류

○ 신청 접수기간: 대출 약정 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

(단, 공급 규모의 소진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접수방법: 전자공문,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등

1) 전자공문: 수신처 (특)한국원양산업협회

2) 전자우편주소: 원협담당자 이메일 기재

3) 우편주소: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상호물산A빌딩)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경영자금 담당자앞

4) 팩스: 02- 589- 1630 ~ 1

○ 신청 시 제출서류(원협 제출서류)

- 1)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별지 서식1] 1부
- 2) (금리 2% 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 관련 선박 수리·개조 사항[별지 서식2]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출신청 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4) (필요시) 신청 공문 1부
- 5) (필요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참고) 대출 실행 시 제출서류(수협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 2) 정관 사본
-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 4) 법인등기부 등본
- 5) 법인인감증명서
- 6)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 7) 조업전문
- 8) 출항증명서
-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10) 소득금액증명원
- 11) 기타 신용조사서 서류 일체 등 수협에서 요청하는 서류